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92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최은석·김기현·이인선

고동진・이종욱・구자근

박충권 · 서일준 · 박덕흠

박성훈 · 신성범 · 송언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되는 중유를 '석유중간제품'으로 별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용처 구분 없이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으로 단순구분하여 세목을 규정하고, 이러한 세목 구분에 따라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해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 래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세계시장에서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력 약화는 물 론, 생산단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는 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는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의 활용을 통해 원유 수

입의 일부를 대체 보완하고 안정적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원유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원료용 중유'에는 이를 부과하여 양 원료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에 기여하고,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18조제1항제14호).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중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	제18조(조건부면세)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	
제한다. 다만, 제3호 가목의 물	
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	
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 <u>신 설</u> >	14. 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원료
	로 사용하는 중유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